

제23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국가보훈
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
다.

2023년 9 월 19 일

여 수 시 장

2023. 9. 19. 

여수시 조례 제1955호

붙임 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여수시 조례 제1955호
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여수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”으로,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전단 중 “100,000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0,000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특례) 명예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“보훈단체”란 여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에 사무소를 두고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「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10조(명예수당 등 지급) ①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0,000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300,000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 3 조 (정 의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「국 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----- 국가보 훈 부 장 관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명예수당 등 지급) ①</p> <p>-----</p> <p>-- 15만원-----</p> <p>-----</p> <p>②</p> <p>-----</p> <p>50만원-----</p> <p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명예수당 등 지급에 대한 특례) 보훈명예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매월 13만원을 지급한다.</p>